

이 분명합니다.

### 마. 고소인 김○○

(1) 고소인 김○○은 삼성 SDI에 다니던 사람들이 위치추적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인인 고소인도 어쩌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고소인은 노조활동과 관련해서 삼성으로부터 늘 동태를 파악당하고 있었고, 도청당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 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 6. 24. 핸드폰의 통화상태가 이상해서 에스케이트 텔레콤의 상담자에게 전화해서 그 이유를 묻자 상담자는 ‘인천 백마산 기지국과 수원 남수원기지국에서 동시에 핸드폰의 발신지가 잡힌다’고 하면서 전화기가 복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2) 다만 고소인 김○○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핸드폰이 오래된 것이어서 네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다른 사람이 고소인의 핸드폰을 복제해서 친구찾기에 가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2004. 6. 25.경 SK텔레콤 수원지사에 확인해본 결과 고소인도 역시 오래전부터 위치를 추적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핸드폰(017-\*\*\*-\*\*\*\*)을 불법복제한 후 2003. 7.28. SK텔레콤의 친구찾기에 가입한 후 고소인의 위치를 추적해 오다가 2004. 3. 20. 친구찾기 가입을 해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고소인이 전화요금을 내지 못해서 핸드폰의 수신, 발신이 중단되었을때에도 피고소인은 수시로 위 불법복제핸드폰으로 친구찾기에 접속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핸드폰 통화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04. 3. 26. 발신중지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후 같은 해 5.9.경까지 피고소인은 불법복제폰을 통해 여러 차례 에스케이텔레콤의 상담자와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는 발신제한이 풀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위 피고소인은 고소인 김○○에 대해서도 핸드폰을 불법복제한 후에 친구찾기에 가입한 후, 위 김○○의 위치를 추적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 3. 고소인들의 현재까지 파악한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들

가. 우선 고소인 김○○, 박○○, 강○○은 자신들이 불법복제핸드폰으로 위치찾기에 가입된 후 누군가에 의해서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자신들의 핸드폰을 위하여 '내위치추적내역'을 확인하였고 그 때마다 이를 사진촬영하였습니다.(증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핸드폰 011-\*\*\*\*-\*\*\*\*의 소지자가 계속해서 위 3사람의 위치를 추적해 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나. 고소인들은 모두 직접 자신들의 SK텔레콤에 통신내역 및 서비스변경이력을 조회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 \* 증제4호증 네이트 친구찾기 설명문
- \* 증제5호증의 1 고소인 김○○의 서비스변경이력조회
  - 고소인이 친구찾기에 가입하거나 해지한 시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 \* 증제5호증의 2 고소인 김○○의 데이터통화내역
  - 범인이 고소인 김○○의 불법복제핸드폰으로 네이트에 접속해서 친구찾기에 가입한 시점과 접속시간, 접속을 위한 발신지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컨대 범인은 2004.5.20. 친구 찾기를 해지한 사실이 있는데 해지를 위해 네이트에 접속한 발신지점이 수원 팔달구 신동으로 되어 있고(삼성SDI 수원공

장도 수원시 팔달구 신동에 있습니다.), 2004. 6. 4. 불법복제

핸드폰으로 4차례 네이트에 접속하였는데 그 중 3번은 수원  
시 팔달구 신동에서, 나머지 한번은 고소인들이 이날 모임을  
가졌던 오산시 오산동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 \* 증제6호증의 1 고소인 강○○의 통화내역
  - 강○○의 음성통화와 데이터통화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증제6호증의 2 고소인 강○○의 데이터통화내역
  - 불법복제폰을 이용해서 친구찾기를 해지한 지점이 안양  
시 동안구 부림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 증제7호증 고소인 김○○의 서비스변경이력조회
  - 고소인 김○○의 친구찾기 가입 및 해지시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 \* 증제8호증의 1 고소인 김○○의 서비스변경이력조회
  - 고소인 김○○의 친구찾기 가입과 해지시기, 그리고 전  
화요금 미납으로 통화정지가 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 \* 증제8호증의 2 고소인 김○○의 통화내역
  - 고소인 김○○이 전화요금미납으로 통화중지가 된 상태  
에서 범인은 상담자와 여러차례 전화를 한 사실을 알 수 있  
습니다.(아마 왜 통화중지가 되었는지, 통화중지가 언제 풀리  
는지에 대해 문의하기 위한 전화였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와  
같이 상담원과 통화할 때의 발신지점이 수원시 팔달구 신동

과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 \* 증제8호증의 3 고소인 김○○의 데이터통화내역
  - 고소인 김○○의 핸드폰은 네이트에 접속이 불가능한 구형 핸드폰이기 때문에 데이터통화는 모두 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통화의 발신자는 모두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 증제8호증의 4 고소인 김○○의 상담내역
  - 고소인 김○○은 2003. 6. 24. 경 자신의 핸드폰의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어서 상담원에게 상담을 한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인천에서 상담원과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상담원은 테스트를 해보더니 동시에 수원지역에서 같은 번호의 핸드폰(불법복제핸드폰)이 사용중이라고 답변하면서 이는 누군가 불법복제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 \* 증제9호증 증거보전결정문
  - 법원이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011-\*\*\*\*\* 핸드폰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전화통화내역에 대해 사실조회촉탁을 결정하였습니다.
- \* 증제10호증 2004.6.30.자 통신자료통보
  - 011-\*\*\*\*\*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데이터통신이용내역으로서 범인은 하루에 최대 40여차례 위치추적을 해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증제11호증 2004. 7.1.자 통신자료통보

- 범인이 011-359-1418을 이용해서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 네이트에 접속한 시간 및 접속한 발신지점이 나타나 있는데 대부분 수원시 장안구 울전동에서 했고 일부는 수원시 팔달 구 신동에서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 가. 휴대폰의 불법복제(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전파법 위반)

###### (1) 법률 규정

######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3항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기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법 제17조 (벌칙)제 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나) 전파법 第46條 (型式檢定 및 型式登錄 등)

①無線設備의 機器를 製作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長官이 행하는 型式檢定을 받거나 型式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試驗 · 研究 또는 輸出用 無線設備의 機器 등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無線設備 機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의 對象機器 · 方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對象機器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 對象機器는 型式檢定에 合格하거나 型式登錄을 한 후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型式檢定 合格標示 또는 型式登錄標示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製作 · 陳列 · 보관 또는 運送하거나 無線局에 이를 設置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을 함에 있어서 情報通信部長官이 지정하는 試驗機關(이하 "指定試驗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性能試驗을 하게 할 수 있다.

⑤電氣通信基本法 第33條의2 및 第52條의 規定은 指定試驗機關의 지정 및 指定取消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같은 법 第8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3.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에 合格하거나 型式登錄을 한 機器 또는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을 한 機器의 性能을 改造·變造·複製한 者

(2) 고소인들이 SK텔레콤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위 친구찾기 서비스의 가입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핸드폰 상의 무선인터넷으로 네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하는 방법과 일  
“인터넷가입수신번호로 네이트에 접속하세요.” 누군가에게 “인터넷가입수신번호로 네이트에 접속하세요.”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방법이건 본인의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가입절차를 밟으면 본인의 핸드폰으로 그 인증번호가 문자로 전송되어 오고, 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가지 방법 모두 본인의 핸드폰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제5호 네이트의 친구찾기 설명문)

(3) 따라서 범인은 고소인들의 핸드폰의 고유번호를 불법적으로 지득한 후, 그것을 이용하여 고소인들의 핸드폰을 불법 복제하였고, 그리고 그 불법복제한 핸드폰을 이용해서 네이트의 친구찾기에 가입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불법복제한 핸드폰을

이용해서 친구찾기를 해지한 것도 분명합니다.

(4) 그리고 이는 고소인 강○○민이 SK텔레콤에서 가서 발급한 통화내역(증제4호)를 보면 명확합니다. 불과 몇분 또는 몇초 사이에 수원에서 통화한 내역과 안양에서 통화한 내역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고, 더구나 당시 고소인이 안양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으로 복제된 휴대폰이 있음이 명백해 진 것입니다.

(5) 따라서 범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통신보호법위반 및 전파법위반의 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나. 개인정보의 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1) 법률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2) 그런데 피고소인이 친구찾기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침해한 고소인의 위치정보는 바로 위 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핸드폰을 불법복제해서 고소인들의 위치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당연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 4. 결 론

이 사건은 누군가가 고소인들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해서 고소인들의 행적을 일일이 추적한 불법행위로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가 왜 위와 같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하였는지는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추측한대로 삼성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며, 불법적인 노조탄압이며, 기업윤리상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정말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 및 파렴치한 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과연 범인이 누구인지, 왜 위와 같은 범행을 저

질렀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증 거 자 료

증제1호 고소인 1(김○○) 내위치조회내역 채증사진

증제2호 고소인 2(박○○) 내위치조회내역 채증사진

증제3호 고소인 3(강○○) 내위치조회내역 채증사진

증제4호 고소인 3(강○○) 통화내역

증제5호 네이트 친구찾기 설명문

2004. 6.

위 고소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칠 준

담당변호사 최 진 환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덧붙임자료] 2. 주 가 고 소 장

고소인 ○ ○ ○(5\*\*\*\*\*-1\*\*\*\*\*)

인천 부평구 청천1동 83의 110

연락처 : 032-\*\*\*-\*\*\*\*, 017-\*\*\*-\*\*\*\*

위 고소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김칠준, 김동균, 최명준, 손난주, 김영기, 김춘희, 최

진환, 장문규

피고소인 : 1. 이 건 회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250 삼성본관

2. 이 학 수

위 같은 곳

3. 김 인 주

위 같은 곳

4. 김 순 택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삼성빌딩 삼성 SDI 본사

5. 이 정 화

위 같은 곳

6. 이 동 육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818 삼성 SDI 울산공장

7. 김 광 하

수원시 영통구 신동 575 삼성 SDI 수원공장

8. 김 동 훈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818 삼성 SDI 울산공장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전파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소 사 유

#### 1.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인적사항

가. 고소인 김○○은 삼성그룹 산하 이천전기주식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6. 11.경 노사협의회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사람으로서 현재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2003. 7.28. 부터 2004. 3. 20.경까지 피고소인들에 의해 위치추적을 당해온 사람입니다.

나. 피고소인 1. 이건희는 삼성그룹 회장, 같은 2. 이학수는 삼성그룹 부회장, 같은 3. 김인주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같은 4. 김순택은 주식회사 삼성 SDI의 대표이사, 같은 5. 이

정화는 같은 회사 부사장, 같은 6. 이동욱은 같은 회사 울산 공장 공장장, 같은 7. 김광하는 같은 회사 수원공장 공장장, 같은 8. 김동훈은 같은 회사 울산공장 인사경영지원팀장이 직책을 맡아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노조정책을 추진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고소인의 핸드폰번호를 불법복제한 후 2003. 7. 경 SK텔레콤 친구찾기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고소인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 2. 추가 고소사실의 경위

가. 고소인등 6명이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동일자에 고소한 사건의 고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대해 그대로 이를 원용합니다.

나. 다만 고소인과 관련된 부분만 다시 한번 적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인 김○○은 삼성 SDI에 다니던 사람들이 위치추적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인인 고소인도 어쩌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고소인은 노조활동과 관련해서 삼성으로부터 늘

동태를 파악당하고 있었고, 도청당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 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 6. 24. 핸드폰의 통화상태가 이상해서 에스케이트 텔레콤의 상담자에게 전화해서 그 이유를 묻자 상담자는 ‘인천 백마산 기지국과 수원 남수원기지국에서 동시에 핸드폰의 발신지가 잡힌다’고 하면서 전화기가 복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2) 다만 고소인 김○○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핸드폰이 오래된 것이어서 네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다른 사람이 고소인의 핸드폰을 복제해서 친구찾기에 가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2004. 6. 25.경 SK텔레콤 수원지사에 확인해본 결과 고소인도 역시 오래전부터 위치를 추척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핸드폰(017-\*\*\*\*-\*\*\*\*)을 불법복제한 후 2003. 7.28. SK텔레콤의 친구찾기에 가입한 후 고소인의 위치를 추적해 오다가 2004. 3. 20. 친구찾기 가입을 해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고소인이 전화요금을 내지 못해서 핸드폰의 수신, 발신이 중단되었을 때에도 피고소인은 수시로 위 불법복제핸드

폰으로 친구찾기에 접속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핸드폰 통화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04. 3.

26. 발신중지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후 같은 해 5.9.경까지 피고소인은 불법복제폰을 통해 여러 차례 에스케이텔레콤의 상담자와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는 발신제한이 풀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위 피고소인은 고소인 김○○에 대해서도 핸드폰을 불법복제한 후에 친구찾기에 가입한 후, 위 김성환의 위치를 추적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 3. 고소인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들

#### \* 고소인 김○○의 서비스변경이력조회

- 고소인 김○○의 친구찾기 가입와 해지시기, 그리고 전화요금 미납으로 통화정지가 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 \* 고소인 김○○의 통화내역

- 고소인 김○○이 전화요금미납으로 통화중지가 된 상태에서 범인은 상담자와 여러차례 전화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아마 왜 통화중지가 되었는지, 통화중지가 언제 풀리는지에 대해 문의하기 위한 전화였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와

같이 상담원과 통화할 때의 발신지점이 수원시 팔달구 신동과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 고소인 김○○의 데이터통화내역

- 고소인 김○○의 핸드폰은 네이트에 접속이 불가능한 구형핸드폰이기 때문에 데이터통화는 모두 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통화의 발신지는 모두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고소인 김○○의 상담내역

- 고소인 김○○은 2003. 6. 24. 경 자신의 핸드폰의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어서 상담원에게 상담을 한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인천에서 상담원과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상담원은 테스트를 해보더니 동시에 수원지역에서 같은 번호의 핸드폰(불법복제핸드폰)이 사용중이라고 답변하면서 이는 누군가 불법복제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4. 피고소인들(삼성)이 이 사건 범죄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들

현재 이 사건 범행이 삼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는 점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소인 김○○과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삼성 SDI 수원공

장과 울산공장의 근로자들 및 근무중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그리고 삼성의 해고자로서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삼성과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그런데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한 핸드폰으로 위치찾기 서비스에 가입한 후 위치추적을 하였고, 사망한 사람의 핸드폰번호까지 이용해서 위치추적을 해 온 사실, 불법복제핸드폰의 소지자와 위치를 추적하는데 사용된 핸드폰의 소지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그동안의 위치추적이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인 이상의 사람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 또한 피해자들중 적어도 삼성 SDI 수원공장 근로자 3명은 동일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위치추적이 결코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라. 피해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이 2003. 7.부터 2004. 6.경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SDI 수원 공장 근로자 3명의 경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인 퇴근시간 후에 집중적으로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누군가 이들의 근무시간외의 활동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컨대 2004. 6. 3.의 경우 이날 이루어진 40회의 위치추적 중 퇴근시간 이후인 18:09 부터 21:47 까지 총 28회에 걸쳐 이루어 졌다는 것은 이들의 퇴근후의 행적에 대해 추적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케 합니다.

**마.** 삼성 SDI 수원공장 근로자 3명의 위치를 추적해온 핸드폰의 소지자는 최근 3개월간 약 650여차례에 걸쳐 위치추적을 해 왔고, 최고 하루 49차례에 걸쳐 위치추적을 한 사실(2004. 3. 18)에 비추어 위 핸드폰의 소지자는 위 근로자 3명이외에 더 많은 사람의 위치를 추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핸드폰은 같은 시간대에 여러사람을 순차로 위치찾기를 하고 하였다. 예컨대 2004.3.18의 경우 13시 12분 56초부터 13시 18분 47초까지 6분간 10회에 걸친 위치찾기를 하였는데 이는 10명에 대해 위치찾기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 고소인들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삼성의 노조결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회합을 가진날 위치추적이 집중되었다는 점.

**사.** 불법복제폰을 이용해서 발신을 할 때의 기지국이 대부분 수원시 영통구 신동(삼성 SDI 수원공장이 있는 곳)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임)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불법복제한 핸드폰을 소지한 사람은 삼성 SDI의 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위치추적을 한 핸드폰의 발신기지국이 대부분 수원시 장안구 울전동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고, 수원시 장안구 울전동에 있는 모처에서 전문적으로 위치추적을 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삼성 SDI 울산공장과 수원공장에서 동시에 위치추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위치추적이 수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5. 결론**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삼성그룹의 경영자들인 피고소인들은 근로자들의 노조결성과 관련된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고소인과 피해자들의 위치를 추적해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야 하고, 삼성도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려는 노력을 벌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모든 사실들을 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삼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고소인과 피해자들의 위치추적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해 엄벌에 처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4. 7.

위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칠 준

담당변호사 최 진 환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7월 22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삼성그룹 본관 앞

### 기자회견 순서

- 개회
- 인사말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희 소장  
    민주노총 1인
- 경과보고 :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 피해당사자 증언
- 질의응답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다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노동당 · 민족민주열사회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사회진보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원불교인권위원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태일기념사업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총 21개 단체)

<기자회견문>

## 삼성그룹은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지난 7월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노동자들이 불법 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해왔으며, 삼성그룹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번의 기자회견 이후 또 다시 9명의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은 모두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이며, 이미 퇴사한 삼성노동자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우리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 역시 전, 현직 삼성노동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하여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적 감시를 자행해왔다는 확신을 굳힐 수밖에 없다.

사실과 정황이 이러함에도 삼성은 올바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려 하기보다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노동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서 사건의 진상 은폐에 급급한 삼성의 모습은 그간 삼성이 사실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회유·위협하면서 무노조신화를 만들어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20여명의 피해자들 이외에 삼성노동자들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삼성그룹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사실에 대하여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피해 입은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차후에 피해사실을 밝힌 삼성노동자들에 대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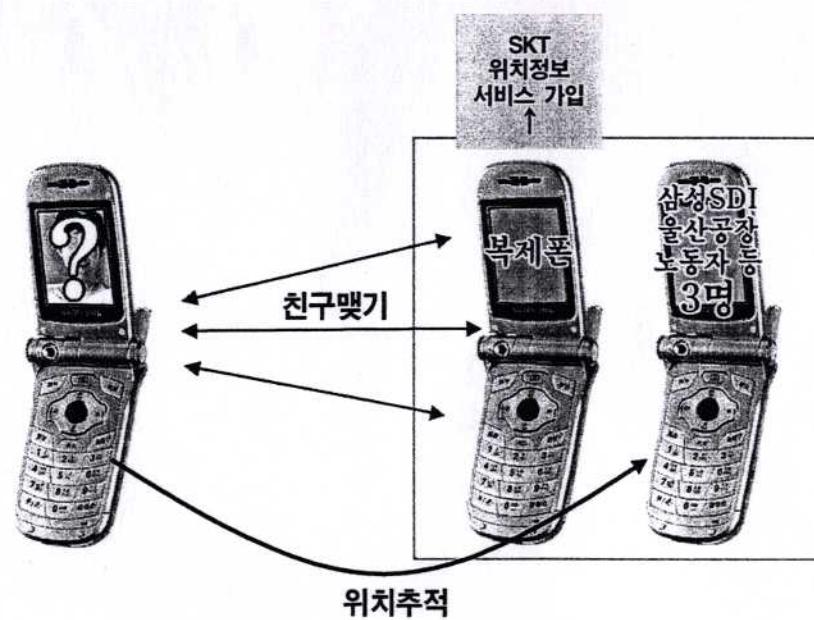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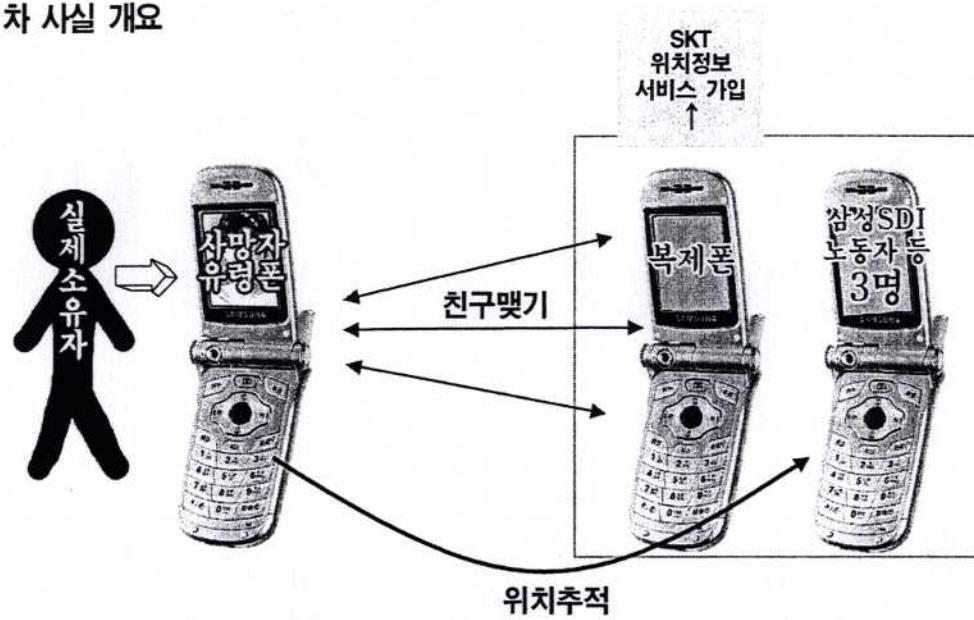
이미 삼성그룹은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하여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했다. 우리는 삼성그룹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삼성그룹은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하여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만이 삼성의 이미지가 더욱 추락하는 것을 막는 길임을 명심하라.

끝으로 우리는 어떠한 외압과 타협에 굽하지 않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피해사실을 밝힌 삼성노동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우리는 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아울러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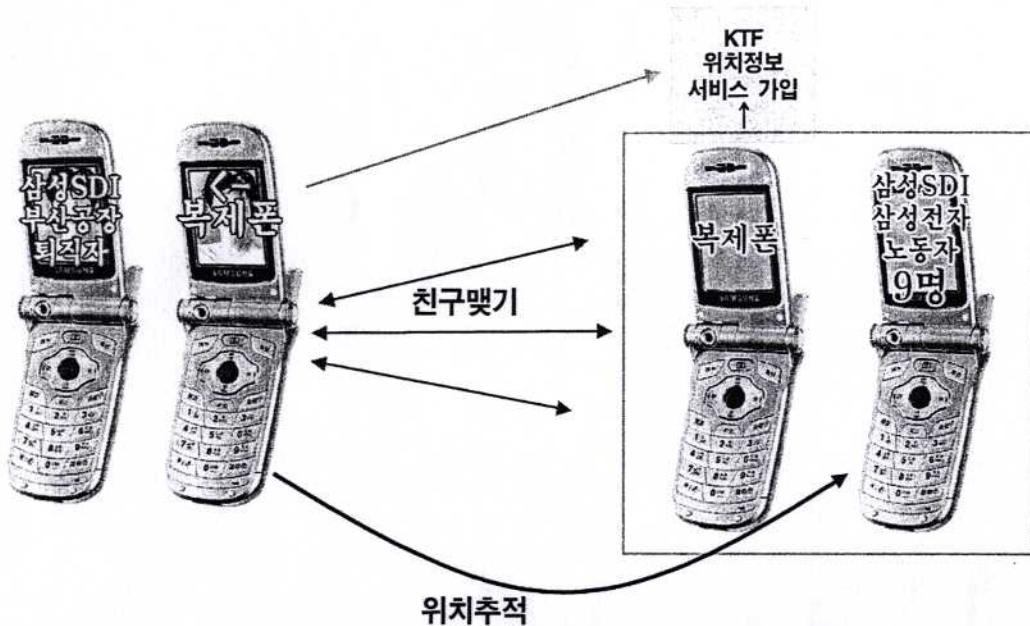
2004. 7. 22

# 삼성그룹 노동자 불법적 위치추적 개요

## □ 1차 사실 개요



## □ 추가 확인 사실 개요



1. 삼성SDI 부산공장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년 경 퇴사한 이모씨는 2003년 8월 경 갑자기 자신의 핸드폰(016-\*\*\*-\*\*\*\*) 요금이 이례적으로 많이 나와 KTF에 그 이유를 문의하자, 이모씨가 친구찾기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들음. 당시 이씨는 친구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친구찾기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음. 하지만 이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 전화요금이 많이 부과되어 하는 수 없이 2003.연말경 자신의 번호를 변경함.
2. 이씨는 누군가 자신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한 후 이를 이용해서 친구찾기를 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KTF 부산지점에 찾아가 핸드폰통화내역과 자신의 불법복제핸드폰으로 누구의 위치정보를 추적했는지 문의하였고, 그 결과 KTF 부산지점의 직원은 누군가 이씨의 핸드폰으로 박모씨, 김모씨, 송모씨 등 9명의 삼성SDI 전현직 직원의 위치를 추적해온 사실을 알게 됨.
3. 이씨는 KTF 부산지점으로부터 2003.8.1.부터 같은 해 10.31.까지의 통화상세내역서를 교부받은 결과 3개월동안 9명에 대해 총 325회에 걸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또한 이씨의 위치추적 핸드폰 발신지역이 전부 수원이라는 답변을 들음. 이씨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씨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한 후 위치추적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임.

4. 이씨의 핸드폰을 통해 위치추적을 당해 온 피해자들 중 박모 씨는 삼성 SDI 수원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2000.경 해고된 해고자이고, 김모씨는 삼성SDI 부산공장에서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2.경 해고된 해고자이고, 송모씨 역시 같은 회사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998.경 해고된 해고자임. 또한 피해자 이모씨는 삼성SDI 부산공장에서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이고, 고모씨는 삼성SDI 수원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999.경 해고된 해고자이고, 김모씨는 삼성SDI 수원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임. 이외에도 삼성SDI 수원공장 퇴사자 2인과 2003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이모씨 등 총 9명이 이씨의 핸드폰을 통해 위치추적을 당하였음.

5. 1차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졌던 사망자의 유령폰을 통한 노동자들의 감시 이외에도 삼성 SDI 및 삼성전자 전현직 노동자들의 핸드폰을 불법적으로 복제한 후, 불법적인 위치추적이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 반인권적, 비도덕적인 노동자 감시 사례가 계속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이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인 중대한 범죄임.

6. 특히 피해자들이 삼성의 노조결성과 관련하여 퇴사한 사람들이며, 위치추적의 방식으로 이를 24시간 감시해 온 것으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만일 이에 대한 삼성SDI 및 삼성그룹의 관련성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면 불법적 노조탄압, 기업윤리상 허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별첨자료]

### 항 의 서 한

삼성그룹은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에 대하여  
당장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1. 민주노총, 참여연대,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사건과 관련하여, 삼성SDI와 삼성전자 대표이사 앞으로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2. 우리는 이 사건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삼성노동자들을 감시하면서 헌법 등 국내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과 개인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여기에 삼성SDI를 비롯한 삼성그룹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3.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는 피해사례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그룹은 검찰의 수사가 끝날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내부적으로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우리는 삼성그룹이 고소인들 등 피해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전, 현직 삼성노동자들에 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유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5. 우리는 또한 어떠한 외압과 타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피해사실을 밝힌 삼성노동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04. 7. 22